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(장기1차)]

- 점검일시 : 2018.12.17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전혜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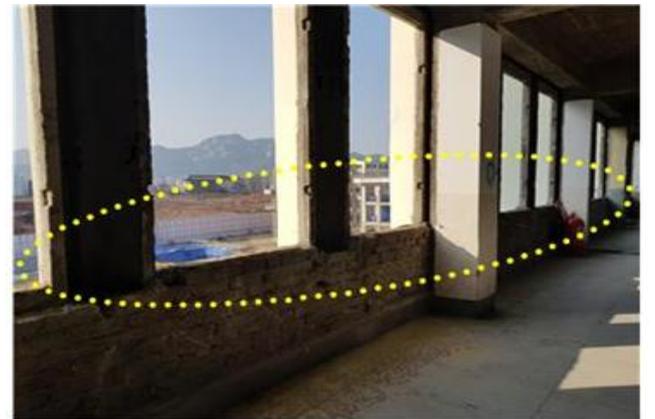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북관에 설치된 워킹타워에서 구조물로 넘어가는 발판의 한쪽 단부가 수평발판에 변형이 쉽게 발생하는 고리부분으로 걸쳐져 있어 고리가 변형되어 발판이 빠질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계나 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과학관 외벽 창호 제거된 상태에서 전 층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. 벽체높이가 80cm이므로 추락위험 있음. 안전난간이나 로프 등 조치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1(안전난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정보관 기존 계단난간 일부가 흔들리고 있어
규정상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황
이므로 보강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근로자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계단의 난간 강
관 파이프 단부가 돌출되어 통행시 충돌, 찰림 등
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CAP으로 보완하기 바
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복관과 본관에 설치된 작업용 워킹타워의 외벽
부에는 낙하/비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끝막
이판이나 수직방망을 설치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3층 개구부 안전난간 사이에 가설재 걸쳐져 있
음. 낙하위험 있으니 조치요망.
- 수직방망도 난간 끝까지 견고하게 설치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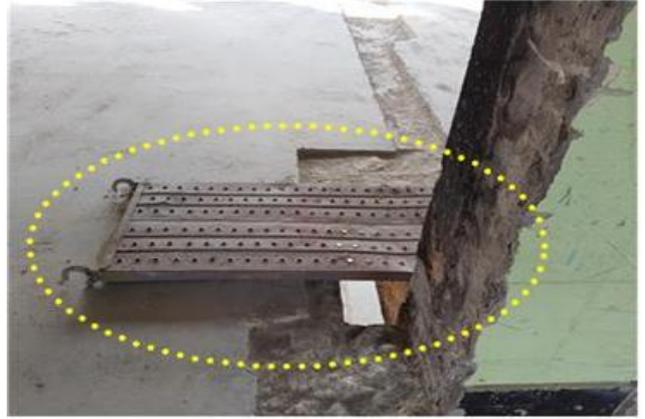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슬래브 바닥 60cm직경의 천공되어 있는 곳에 비계작업발판을 덮개 대신 올려놓았음.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량물 덮개 설치 등 보완요망

- 현장 전체적으로 배관철거로 인해 발생된 흠은 낙하/비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방호요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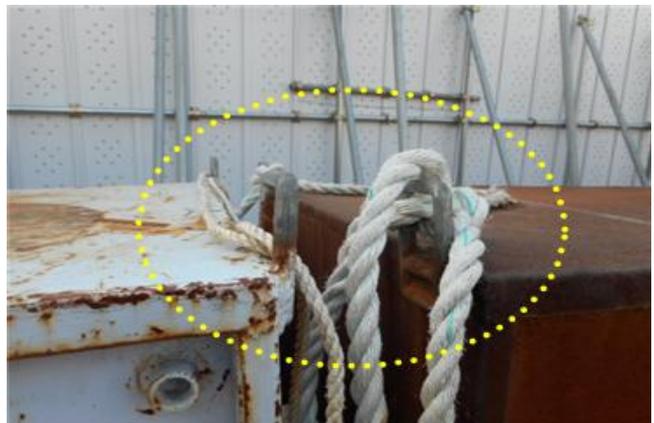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반출 예정인 철제 박스는 현재 걸어 놓은 규격 이하 또는 손상된 섬유로프는 제거하고, 안전한 줄걸이를 사용하여 인양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(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), 제169조(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)



○ 가설비계 안전(건축부)

- 외벽 비계 고정용 내부 동바리 지지 상태가 미흡함. 외부 비계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고정조치 요함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(비계의 점검 및 보수)



○ 가설비계 안전(건축부)

-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비계도 구르지 않도록 바퀴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웃트리거를 고정하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요망
- 아웃트리거가 없고 훼손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출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(이동식비계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4(사다리(일자형)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본관 인근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수전을 받는 배선용차단기와 그 밑에 배선용차단기는 미세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충전부에 손이 접촉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요망
 - 본관 출입구 정면 바닥에 깔려 있는 가설전선은 작업자와 장비가 밟고 다녀 피복이 손상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양하거나 보호 조치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, 제315조(통로 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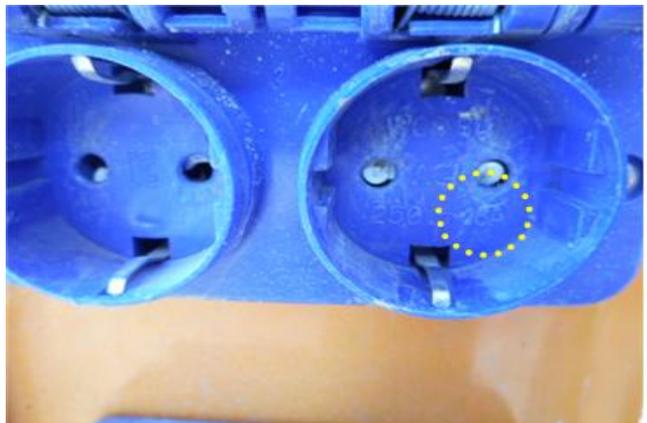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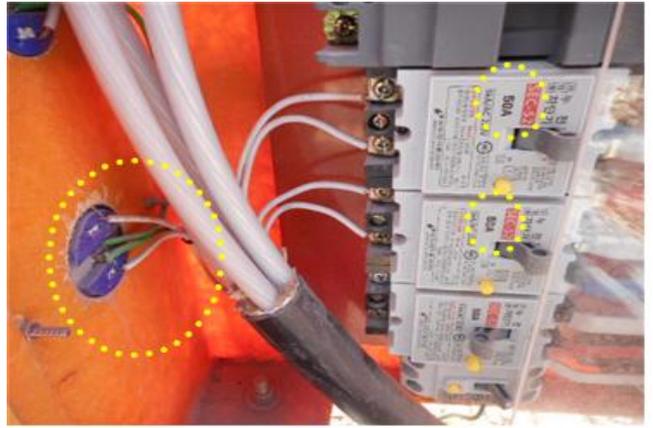
- 가스용기를 위험물 보관소에 저장할 경우 현장에 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(GHS MSDS) 뿐만 아니라 가스용기 안전수칙이 있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(가스등의 용기)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콘센트 16A에 누전차단기 50A 상태에서 17~49A의 전기기계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전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고 콘센트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센트를 50A로 교체하거나 누전차단기를 20A로 교체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




○ 품질관리(건축부)

- 보호조치 없이 지중경사계는 덮개가 빠져 있고, 지하수위계는 노출된 상태로 지중경사계는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측정이 안될 수도 있고, 지하수위계는 지하수가 결빙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 후 시건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